

#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119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,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'16.12월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였음
- 나. 노후 열수송관 적기 교체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및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,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향상 등 공사 수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
- 다. 「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수권자 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출자개요

- 대 상 : 서울에너지공사
- 출자규모 : 35,310백만원('24년)
  - 노후 열수송관 교체 : 24,050백만원
  - 서남집단에너지 시설 건설(2단계) : 7,500백만원
  - 에너지 취약계층 열요금 지원 : 3,785백만원

(단위 : 억원)

사업명	소계	기출자				'23년	'24년	'25년
		'19년	'20년	'21년	'22년			
합 계	2,499	86	160	140	215	379	353	1,166
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	659	-	-	-	59	200	240	160
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(2단계)	1,764	86	160	140	156	179	75	968
에너지 취약계층 열요금 지원	76	-	-	-	-	-	38	38

## 나. 출자 필요성

- 노후화 및 이상 징후 발생 열수송관에 대한 교체 등 체계적 정비를 통해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
  - '24년 노후 열수송관 8.0km 교체 등 '26년까지 41.6km 교체
- 서남권 지역에 대한 안정적 열공급을 위해 '19년부터 출자중인 서남 집단에너지 시설 2단계 건설 사업에 '24년도에도 출자
  - 총 사업비 5,291억원 중 1,764억원은 시비로 연차별 분할 출자하고 나머지 3,527억원은 공사에서 공사채 발행을 통해 충당
    - ※ 시비 총액 1,764억원은 제308회('22.5월) 정례회 기 동의
- 아울러 난방요금 급등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복지 정책으로 인한 공사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고자 시비 출자하고자 함
  - 기초생활수급권자, 장애인 등 7만여 세대에 난방비 38억 지원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, 지방공기업법,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,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# [지방재정법]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<생략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**[지방공기업법]**

제53조(출자)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②~③ 항 생략

**[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]**

제27조(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) ① 시장은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 ~ 5. 생략

6.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[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]**

제20조(사업)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 ~ 9. 생략

10.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출자금 예산 반영

※ 작성자 :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장 수(☎ 2133-3556)